

#### 2015년 선거 일정

8월 21일 예비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이날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9월 15일** 예비선거일

10월 9일 본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이날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11월 3일** 본선거일

선거 당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일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www.nyccfb.info을 방문하거나 선관위 유권자 상담전화 866-VOTE-NYC (866-868-3692)로 문의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행사에 대한 문의는 nycvotes@nyccfb.info로 이메일 하시거나 212-409-1800로 전화하십시오.

## 2015년 선거 경선 안내

## 지방검사 — 브롱크스, 퀸즈, 리치몬드 카운티

뉴욕주 헌법 제13조 13항은 지방검사를 4년에 한 번 선출되는 공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법 제927항에 따라 지방검사는 담당 지역 내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통해 주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출처: http://a856-gbol.nyc.gov/gbolwebsite/262.html)

#### 판사 - 뉴욕주 제1심 법원

뉴욕주 제1심 법원은 하급 법원의 심할권 밖에 있는 사건을 다루는데, 그중에는 소송액이 \$25,000를 초과하는 민사소송; 이혼, 별거 및 혼인 무효 소송;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중범죄에 대한 형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제1심 법원 판사는 14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 판사 — 민사법원

뉴욕시 민사법원은 소송액이 \$25,000 미만인 소송을 다룹니다. 민사법원 산하에는 소송액이 \$5,000 미만인 사건을 처리하는 소액 재판소와 임대인-세입자 및 주택법 위반 소송을 취급하는 주택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민사법원은 뉴욕주 제1심 법원이 송부한 민사소송을 다루기도 합니다.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의 임기는 10 년이고 투표로 선출됩니다. 주택법원 판사는 수석행정판사에 의해 임명되며 그 임기는 5년입니다.

(출처: https://www.nycourts.gov/vote/)

# 특별선거 — 2015년 5월 5일

#### 연방 하원 - 제11선거구

헌법에 따라 미국 하원은 연방 법안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하원은 상원과 함께 미국 국회를 이루며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부입니다. 법에 따라 하원의 의석수는 최고 435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인구수에 따라 50개의 주별로 배분됩니다. 하원의원은 각 지구의 주민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하원의원은 법안, 결의안 및 개정안을 상정하며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각 주가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처: http://www.house.gov/content/learn/)

#### 뉴욕주 하원 - 제43선거구

주 하원은 총 150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65석이 뉴욕시지역을 대표합니다. 주 하원의원들은 상원의원들과 동일한 입법 권한을 소유합니다. 하원은 법안 발의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의결을 통해 통과시킵니다. 모든 법안은 양원을 통과해야 주지사에게 이송되며 주지사는 이를 승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봉은 \$79,500입니다. 주 하원의장은 연간 \$41,500의 추가 급여를 받습니다.

특별선거 일정	
4월 10일	우편으로 보내는 특별선거 등록 신청서는 꼭 이날까지의 소인이 찍혀야 유효합니다. (신청서는 4월 15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4월 25일	특별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이날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4월 28일	특별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이날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힌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4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5월 4일	특별선거 부재자 투표용지는 이날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혀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5월 12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5월 5일	특별선거일

